

편집위원회 세칙

制定 2000. 9. 29.
改定 2001. 6. 22.
改定 2007. 2. 23.
改定 2008. 12. 12.
改定 2013. 12. 31.
改定 2015. 9. 18.

제 1 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, 학회지(소음·진동)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2 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, 편집이사(학회 편집담당 이사) 및 부문리더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다수의 일반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 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2. 편집이사, 부문리더 및 일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본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1. 편집위원장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회원중에서 공모 또는 회장의 추천.
2. 편집이사 및 부문리더는 편집위원장의 추천.
3. 일반위원은 당연직위원의 추천.

제 5 조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제 6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관련 중요 결정사항을 편집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 7 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본 세칙은 2000년 9월 29일부터 발효한다.

부 칙

본 세칙의 개정된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.